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종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110

발의연월일: 2022. 4. 6.

발 의 자:이종성・구자근・김승수

김용판 • 박대수 • 박덕흠

성일종 • 전봉민 • 정운천

조명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가 개정되어 2 022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를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금액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하게 되며,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주택대출 관련 금융정보를 확보해야 함. 이와 관련해 현행법에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 법률」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융회사등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주택대출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야 함. 그러나 이와 같은 자료 확보 방식은 지역보험료 산정 시 대출금액 제외를 원하는 사람이 각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출 관련 금융정보를 개개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. 따라서 금융기관의 주택대출정보를 일괄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신청자의 대출관련 금

용정보를 일괄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(안 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 제72조제3항, 제9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).

법률 제 호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2조제3항 중 "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"을 "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,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"로, "대출금액, 그 밖에"를 "대출금액 등"으로, ""금융정보"라"를 "'금융정보등"이라"로, "금융정보등"을 "금융정보등을"로 한다.

제96조의2의 제목 중 "금융정보"를 "금융정보등"으로 하고, 같은 조제1항 중 "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"을 "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"로, "금융회사등"을 "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(이하 이 로에서 "금융기관등"이라 한다)"로, "금융정보를"을 "금융정보등을"로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금융정보의"를 "금융정보등의"로, "금융회사등"을 "금융기관등"으로, "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"을 "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금융

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"로, "금융정보를"을 "금융정보등을"로 한다.

제96조의2제3항 본문 중 "금융정보를"을 "금융정보등을"로, "금융회사 등"을 "금융기관등"으로, "금융정보의"를 "금융정보등"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"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"을 "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7항, 제35조제2항 및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금융정보"를 "금융정보등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정 혅 행 개 아 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| 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2조(보험료부과점수) (1)~(2) 제72조(보험료부과점수) (1)~(2)(생 략) (현행과 같음) ③ -----③ 지역가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에 통보할 때 「금 융실명거래 <u>및 비밀보장에</u> 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한 법률 | 제2조제1호에 따 따른 금융자산, 같은 조 제3 른 신용정보,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-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 에 대한 자료 · 정보 중 대출 금액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· 정보(이하 "금 융정보"라 한다)를 공단에 융정보등"이라-----제출하여야 하며, 제1항 단서 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 정을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 -----금융정 보를 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 ④ (생 략) ④ (현행과 같음) 제96조의2(금융정보의 제공 등) 제96조의2(금융정보등-----) ① 공단은 제72조제1항 단서에 ① -----

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 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 장에 관한 법률 | 제4조제1항에 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제7 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 서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의 장 에게 금융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등 의 장은 「금융실명거래 및 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를 제공한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

-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| 제32조 및 「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_ ---------_「신용정보 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 정보집중기관 또는 「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 회사등(이하 이 조에서 "금융 기관등"이라 한다)---- 금 융정보등을-----② -----금융정보등의-------금융기관등 -----「신용정보의 이용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| 제4 | 및 보호에 관한 법률 | 제32조 및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 장에 관한 법률 | ----------금융정보등을----. ③ ----- 금융정보등을----금융기관등----금

용정보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다음 생물 기계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<u>금융정보</u>의 제공 요청 및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| <u> 융정보등의</u>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
| |
|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|
| <u>관한 법률」 제32조제7항, 제35</u> |
| 조제2항 및 「금융실명거래 및 |
|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|
| 4 |
| <u>금융정보등</u> |
| |
| |
| |